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화산 향약(鄉約)’과 향촌 자치 구상

김종수
세명대 강사

목 차

1. 머리말
2. <향약절목(鄉約節目)>의 제시
3. <입약범례(立約凡例)>의 구성과 지향
4. 회집(會集)·직임(職任) 규정과 화산 향약의 비전
5. 맺음말

[국문초록]

19세기를 전후로 한 무렵에 공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화산 정규한은 노론 내 호론 계열로 분류되는 산림이자 재야 유학자다. 이 같은 정규한의 당파적 소속은 우암 송시열의 5대손으로 호론계의 종장이었던 성담 송환기의 문하에 종유하였던 학연과도 직결되어 있다. 정규한은 정조가 주관한 전시에서 사실상 수석을 차지했던 이력이 있었지만, 과거를 단념하고 평생을 재야의 뜰에서 오롯이 학문 연구와 강학 활동에만 전념했던 순수한 학자형의 인물이다. 정규한이 가치 ‘화산향약’을 향촌에 제시했던 이유도 주로 고향 지역에서 활동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을뿐더러, 또한 그가 구축한 학문세계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의미를 아울러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정규한은 기존 <여씨향약>과 <주지증손여씨향약>, 그리고 율곡 이이의 <해주향약>과 읍·현의 선행 사례들을 두루 참조한 끝에, 강목인 <향약절목>과 세칙에 해당하는 <입약범례>를 입안하게 되었다. 정규한이 제시한 화산향약은 여씨·주자·율곡의 그것에 비해서 간략하면서도 실용성과 시의성을 동시에 강화시킨 특징이 있다. 특히 <향약절목>을 지행하기 위한 규정집인 <입약범례>의 경우, 향촌인 화산 지역의 특성과 변모하는 18, 19세기의 사회상을 잘 반영시켰기에, 이른바 ‘조선향약’의 한 전범을 개척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정규한은 <입약범례>의 말미를 통해서 화산향약이 맹자의 ‘천하평(天下平)’과 “당우

(唐虞)의 풍속”을 구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한 점도 주목된다. 물론 그 이면에는 “요순(堯舜)의 도(道)는 효제(孝悌)일 따름이다.”는 명제로 표상되는 자신의 학적 강령인 효제 철학이 내밀히 관여하고도 있었다. 공맹의 원시유학이 제공한 경학적 권위에서 출발한 정규한의 화산향약은 향촌 공동체의 자치 규범에 관한 지적 결실임과 동시에, 전근대 시기 사회에서의 전형적인 유토피아 담론의 성격을 아울러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화산 정규한, 향약절목, 입약범례, 향촌, 율곡 이이

1. 머리말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 1751~1824)은 조선 후기인 영조(英祖)·순조(純祖) 연간에 호서권인 공주(公州)의 궁벽진 화산 지역에서 활동했던 산림이자 재야 유학자다. 정규한의 당파적 소속은 노론(老論) 내의 호론계(湖論係)로 분류되는데, 그 이면에는 그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5세 손인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 1728~1807)의 문하에 종유(從遊)했던 학연과 직결되어 있다. 정규한은 충분히 문과에 등제(登第)할만한 실력을 갖춘 학자였지만, 평생을 향리에서 머무르며 학문 연구와 강학(講學) 활동에만 전념했던 순수한 학자형의 인물로 평가된다. 그 결과 정규한은 새롭게 효제(孝悌) 철학을 제창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학문세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나, 이쉽게도 문집(文集) 외의 저서를 남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규한은 그가 타계한 지 200여 년 만에 공주시에 의해 ‘2021년 1월의 공주 역사인물’로 선정되는 사후(死後)의 영예를 안게 되었다.¹⁾ 이처럼 시당국이 정규한에 대한 선양(宣揚) 조치를 취한 이유로는, 화산이 수립한 학문 세계와 화산영당(華山影堂)으로 대변되는 지역 내에서의 강학 활동이 뒤늦게나마 재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공주시는 정규한이 생전에 <향약절목(鄉約節目)>의 입안을 통해서, 향촌 사회에 펼쳤던 교화(教化)에의 노력에도 주목한 바가 있다. 반면에 공주시는 <향약절목>을 실질적으로 기능하

1) 김상훈, 『공주시, 1월의 역사인물 ‘화산 정규한’ 선정』, 『忠南日報』(2020.12.30).
<http://www.chungnamilbo.co.kr>(2022.01.07).

게 해주는 지침이자 규정집의 성격을 띤 〈입약범례(立約凡例)〉로까지는 채 눈길이 미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금번 논의를 통해서 강목(綱目)과 세칙(細則)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향약절목〉과 〈입약범례〉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19세기를 전후로 한 시점에서 정규한이 선보인 ‘화산향약’의 특징적인 면모를 소상하게 규명해 내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정규한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향약절목〉·〈입약범례〉가 지향했던 궁극적인 목적인 ‘천하평(天下平)’ 이념 및 “당우(唐虞) 삼대의 풍속”과 더불어, 또한 절목·범례의 근거를 관류하는 효제 철학에 관한 논급도 아울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런 점에서 본 논의는 정규한이 제창한 학적 강령인 효제 철학과 그 사회적 실천이라는 두 측면에 걸친 논의의 성격을 띠게 된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학계의 공적 논의의 장(場)에서 사실상 망각된 상태를 유지해 왔던 한 사람의 재야 유학자를 새롭게 발굴해 냄으로써, 이미 정형화된 틀을 갖춘 한국지성사의 외연을 보다 확장시켜 나가는 유의미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이번의 논의가 공주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콘텐츠를 새롭게 창출해 내는 일련의 도정(道程)에서 유익한 인문학적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기를 아울러 기대해 본다.

2. 〈향약절목(鄉約節目)〉의 제시

〈향약절목〉과 〈입약범례〉는 정규한의 문집인 『화산집(華山集)』의 『잡저(雜著)』에 차례대로 수록되어있으나, 두 저술을 작성한 시기가 누락되어 있다. 기실 『화산집』의 경우, 정규한의 일대기에 해당하는 〈행장(行狀)〉마저도 연도 표기가 누락된 탓에, 이 책의 기록적 가치를 크게 감쇄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한이 〈향약절목〉과 〈입약범례〉를 찬(撰)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남는다. 아마도 두 작품은 문인(門人)들이 정규한을 “화산(華山) 선생(先生)”²⁾이라 칭했던 시점, 곧 정규한이 “남은 생애엔 약초나 케어 더욱 분수[分]

에 마땅하게 하고, 원컨대 천태학(天台學)을 배워 사마자미[子微]의 경지에 들고파라!”³⁾고 읊조리며 지역 사회의 원로로 위상했던 인생 후반기에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상 정규한이 생전에 강학 활동을 영위했던 공간인 화산정사(華山精舍)의 후신인 화산영당의 영건사(營建史)를 기록한 『화산영당지(華山影堂誌)』에도 <향약>이라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⁴⁾ 그리고 <향약>의 바로 앞 항목에는 <정사상량문(精舍上樑文)> · <정사팔영(精舍八詠)>이 편집되어 있는바, 이는 화산향약이 정규한이 펼쳤던 강학 활동과 병행되었을 개연성을 시사해 준다. 그러면 이제 <입약범례>에 대해서 강목에 해당하는 <향약절목>의 주된 열개며 특징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정규한이 작성한 <향약절목>도 기존의 <여씨향약(呂氏鄉約)>에서 제시한 ‘덕업상권(德業相勸) · 과실상규(過失相規) · 예속상교(禮俗相交) · 환난상휼(患難相恤)’ 네 강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⁵⁾ 즉, 11세기 초반에 북송(北宋)의 여대림(呂大臨) 형제가 향촌의 풍속을 교화 · 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적인 규약이 “화악(華嶽)의 늪은이”로 자칭했던 정규한에 의해 “고요한 벽향(僻鄉)”⁶⁾인 화산에서 그대로 재현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규한이 제시한 <향약절목>의 경우,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가 주자[주희(朱熹)]의 <주자증손여씨향약(朱子增損呂氏鄉約)>을 본떠서 작성한 <증손여씨향약문(增損呂氏鄉約文)>⁷⁾에 비해서 상당히 간략한 편이다. 이와 관련해서 율곡은 “대개 <여씨향약>을 본받았지만, 절목은 대부분 같지 않다.”고 밝힌 바가 있다.⁸⁾ 실제 율곡 또한 기존 <여씨향약>에서 제시한

2) 鄭奎漢, 『華山集·附錄』(한국문집총간 續102), 『行狀(黃鈺)』(한국고전번역원, 2010), 432쪽, “公諱奎漢 … 世居公州之華山, 門人以華山先生稱焉.”
 3) 鄭奎漢, 『華山集』卷1, 『七言律詩』, <華山隱居秋景>, 325쪽, “世事盲聾日揜扉, 琴書蕭灑映秋暉 … 殘年採藥偏宜分, 願入天台學子微.” ‘자미(子微)’는 당(唐)나라의 도사(道士)로 『좌망론(坐忘論)』을 지은 사마자미(司馬子微)를 가리킨다.
 4) 華山影堂, 『華山影堂誌』(上), 太陽文化社, 檀紀4294년[1961], 30~32쪽.
 5)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都約憲一, 副約憲二, 掌議一, 公員一, 有司二, 色掌一)>, 406쪽, “德業相勸 … 過失相規 … 禮俗相交 … 患難相恤 …” 이하에서는 “도약헌 1인, 부약헌 2인, 장의 1인, 공원 1인, 유사 2인, 색장 1인을 둔다.”고 설명한 괄호 안의 내용은 생략한다.
 6) 鄭奎漢, 『華山集』卷1, 『五言律詩』, <次鄭亨甫湖南途中韻>, 319쪽, “回思華嶽老 … 涵養中和氣, 閒居靜僻鄉.”
 7) 李珣, 『栗谷全書 I』卷16(한국문집총간 44), 『雜著 3』, <海州鄉約>(민족문화추진회, 1986), 344쪽, “增損呂氏鄉約文, 大概倣呂氏鄉約 …”

강목은 그대로 수용하였지만, 네 종류의 강목을 무려 7쪽 정도의 긴 분량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 16행에 그친 정규한의 <향약절목>의 그것과는 판이한 양상인 것이다. 이러한 정황은 율곡의 그것과 동일한 명칭을 취한 <입약범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정규한·이이의 <향약절목>·<증손여씨향약문>의 내용 구성이 이토록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덕스러운 일은 서로 권장한다.(德業相勸)”고 규정한 첫 번째 강목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단, 정규한은 <향약절목>에서 ‘덕(德)·업(業)’ 두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빌려서 ‘덕업’을 서로 권장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율곡을 포함한 여타의 절목 수용자들이 취한 공통된 특징을 형성하고 있다. 먼저, 전자인 ‘덕’자와 관련해서 정규한은 “덕(德)이란 부모께 효도[孝]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형제 사이에 우애[友] 있게 하고, 웃어른께 공경스럽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1차적인 개념 정의를 시도한 뒤에,⁹⁾ 아래와 같은 부연 설명을 덧붙여 두었다.

“(덕이란) 도(道)로써 몸을 다스리고, 예(禮)로써 가정을 바르게 하며, 말은 반드시 진실되고 미답게 하고, 행실은 반드시 독실·공경스럽게 하며, 선(善)을 보면 반드시 행하고, 허물을 들으면 반드시 고치며, 제사[祭]엔 그 정성을 다하고, 상(喪)에는 그 슬픔을 극진히 하며, 친족 간 화목하고 이웃을 사귀며, 벼를 가려 어진 이와 친히 하고, 아들은 방정[方]하게 가르치며, 아랫사람을 거느림에 법(法)이 있게 하고, 가난하나 청렴한 절개를 지키며, 부유하되 예와 겸양을 좋아하는 (등의) 부류[類]를 말한다.”¹⁰⁾

이상에서 열거된 사항들을 정리하자면, 정규한의 경우 ‘효(孝)·충(忠)·우(友)·제(悌)’를 수(首) 덕목으로 제시한 가운데, ‘치신(治身)·정가(正家)·언

8) 李珣,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4쪽, “增損呂氏鄉約文, 大概倣呂氏鄉約, 而節目多不同.”

9)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德業相勸: 德, 謂孝於父母, 忠於國家, 友於兄弟, 悌於長上...”

10)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治身以道, 正家以禮, 言必忠信, 行必篤敬, 見善必行, 聞過必改, 祭盡其誠, 喪致其哀, 睦族交隣, 擇友親仁, 教子有方, 御下有法, 貧守廉介, 富好禮讓之類.”

행(言行)·선악(過)·제상(祭喪)·교린(交隣)·택우(擇友)·교자(教子)·어하(御下)·빈부(貧富) 등과 같이 도합 15항목¹¹⁾에 걸쳐서 각기 이상적인 덕목들을 배속(配屬)시킴으로써, 강목인 ‘덕업상권’이 적용되는 범위와 그 필요성을 제시했던 것이다. 정규한이 예시한 항목들과 짝해진 각각의 덕목들이란, 전근대 시기 사회에서의 일상(日常)을 구성하는 제반 영역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규한이 입안한 ‘덕업상권’의 내용은 율곡이 제시한 해당 덕목들 중에서, “분한 마음을 징계하고 욕심(慾)을 막으며, 음탕한 음악(聲)을 버리고 여색(女)을 멀리한다.”¹²⁾는 두 구절을 제외한 결과라는 점이 자못 주목된다. 실상 율곡이 고안(考案)한 <해주향약(海州鄉約)>에 대한 지배적인 의존도란, 정규한이 제시한 <향약절목>과 <입약범례>의 가장 특징적인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한 현상이 발생한 이면에는 정규한의 스승인 송환기가 기호학(畿湖學)의 원류에 해당하는 학적 위상을 점유한 율곡학(栗谷學)의 지적 권위에 크게 의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¹³⁾ 화산의 당파적 소속처인 노론계의 도통(道統)[학통] 상전(相傳)에의 책무감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한이 여타의 사례들을 참조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아니다. 이를테면 호남의 칠성현(七城縣)[익산]에서 <여씨향약>을 시행한 결과, “그 유휘여속(遺風餘俗)이 여전히 보존되어 전해진” 교화의 결실이 크게 고무되었던바,¹⁴⁾ 이는 정규한이 읍(邑)·현(縣) 단위에서 시행되었던 선행 사례들을 두루 참조했을 것임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율곡이 제시한 기존의 <해주향약>과 <향약절목>·<입약범례> 간의 동이(同異) 양상을 세세히 추적하기보다는, 정규한이 입안한 절목·범례의 주

11) 의형상으로는 14항목이나, ‘목족교린(睦族交隣)’의 경우 친족[族]·이웃[鄰]이 양분된 점을 감안했다.
 12) 李珣,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7쪽, “德業相勸：德，謂孝於父母，忠於國家，友于兄弟，弟于長上，治身以道，正家以禮，言必忠信，行必篤敬，懲忿窒慾，放聲遠色，見善必行，聞過必改，祭盡其誠，喪致其哀，睦族交鄰，擇友親仁，教子有方，御下有法，貧守廉介，富好禮讓之類。”
 13) 김중수, 『함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27(포은학회, 2021), 80쪽.
 14) 鄭奎漢, 『華山集』卷5, 『記』, <龍安縣監李侯銜去思閣記>, 395쪽, “七城縣，於湖南諸邑中最僻且小 … 呂氏鄉約，每春秋會 … 而其遺風餘俗，猶有存者，世之爲是縣者 …”

된 내용과 그 특징을 규명하기 위한 애초의 집필 의도에 충실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정규한은 어떤 이유로 율곡이 제안한 ‘징분질욕(懲忿窒慾)·방성원색(放聲遠色)’ 두 세칙을 제외시켰던 것일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해주와 궁벽진 향촌인 화산 지역의 차이, 곧 공간적 특수성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일 것으로 사료된다. 다시 말해서 『도덕경(道德經)』의 경구처럼, “이웃 나라가 서로 바라 보이고, 닭이나 개 짖는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¹⁵⁾인 벽향(僻鄉)인 화산 지역의 경우, 향촌 사회의 특성상 ‘징분질욕’과 ‘방성원색’은 굳이 불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었던 것이다. 이에 정규한은 율곡이 <해주향약>에서 제시한 세칙들을 대부분을 수용하되, 자기 나름의 취사(取捨)의 원칙을 적용해서 두 가지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은 ‘덕업’의 ‘업(業)’ 자를 정의한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되고 있다.

“업(業)이란, 서책을 읽고 일[課]에 부지런히 힘쓰며, 글자를 읽히고 수(數)를 밝히며, 집안을 경영하되 구차스럽지 않게 하고, 전답을 다스리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며, 능히 은혜를 널리 베풀고, 능히 싸움을 풀리게 하며, 능히 법령(法令)을 두려워하고, 조세[租]와 부역[賦]에 부지런히 임하는 부류를 말한다.”¹⁶⁾

정규한이 율곡에서 ‘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내용들도 율곡이 입안한 해당 내용¹⁷⁾을 그대로 인용했거나 부분적으로 변용한 것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율곡의 그것을 단순 모방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를테면 <증손여씨향약문>의 ‘독서궁리(讀書窮理)’와 ‘능근과정(能謹課程)’을 합쳐서 ‘독서근과(讀書勤課)’로 변개한 것이라든가, 혹은 율곡의 안(案)에는 없는 ‘치전권간(治田勤幹)’을 신설한 장면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한은 <증

15) 老子, 『道德經』, <80章>, “隣國相望, 鷄狗之聲相聞, 民至老死, 不相往來.”

16)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業, 謂讀書勤課, 習字明數, 營家不苟, 治田勤幹, 能廣施惠, 能解鬭爭, 能畏法令, 能勤租賦之類.”

17)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7쪽, “業, 謂讀書窮理, 習禮明數, 能肅家政, 能謹課程, 營家不苟, 濟物行仁, 能踐約信, 能受寄託, 能救患難, 能廣施惠, 能導人爲善, 能規人過失, 能爲人謀事, 能爲衆集事, 能解鬭爭, 能決是非, 能興利除害, 能居官舉職, 能畏法令, 能謹租賦之類.”

손여씨향약문)에서 내용이 다소 중복된 절목들과 ‘제물행인(濟物行仁)’처럼 추상적인 사항들도 수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합 20여 절목에 이르는 율곡 〈증손여씨향약문〉의 ‘업’ 자 정의에 비해서, 여덟 절목에 한정된 정규한의 그것은 화산의 실정에 맞는 실용적이면서도 간명한 내용으로 대체되었던 것이다. 특히 “전답을 다스리되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한다[治田勤幹].”는 규정의 경우, 16세기 후반의 해주와도 전혀 달랐던 궁벽진 화산 지역의 생활 실상을 잘 반영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이는 〈향약절목〉을 실행하기 위한 직임(職任) 구성으로 “도약헌(都約憲) 1명·부약헌(副約憲) 2명·장의(掌議) 1명·공원(公員) 1명·유사(有司) 2명·색장(色掌) 1명”¹⁸⁾을 두도록 했던 화산 지역과는 달리, ‘약정(約正)·도부정(都副正)·부약정(副約正)·직월(直月)·사화(司貨)·노복(奴僕)’ 등으로 이뤄진 해주향약의 〈입약범례〉 직임(職任) 구성을 통해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¹⁹⁾

한편 “잘못은 서로 바로잡아 준다.(過失相規)”고 제안한 두 번째 강목의 경우, 율곡이 ‘과실(過失)’ 두 글자를 정의한 데 반해서²⁰⁾ 정규한은 ‘과(過)’ 자를 두 측면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취급한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과·실’ 두 자가 내용상 동의어라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정규한이 시도한 ‘과’ 자에 대한 개념 정의 속에는 19세기를 전후로 한 향촌의 변모하는 사회상이 적나라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잘못[過]이란, 성을 내며 다투고 싸워 송사를 일삼으며, 술에 취해 주정하고 악독한 성질을 함부로 부리며, 행실이 공손하지 않고, 말은 참되고 미덥지 않으며, 말을 꾸며 무고[誣]·비방[毀]하고, 사익[私]을 꾀함이 너무 지나치는 것을 말한다.

(잘못이란.) 사람과 더불어 교역(交易)하되 남은 손해를 보고 자신은 이롭게 하고, 한전(旱田)[밭]에 물을 대서 수리(水利)를 오롯이 차지하며, 즐기며 놀아 게을러 빠지

1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5쪽, “都約憲一, 副約憲二, 掌議一, 公員一, 有司二, 色掌一.”

19)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4쪽, “一, 衆推一人有齒德學術者, 爲都約正, 以有學者二人副之, 約中輪回爲直月司貨, 直月必以有奴僕可使者爲之, 司貨必以書院儒生爲之, 都副正非有故則不遞, 直月每會輪遞, 司貨一年輪遞.”

20)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7쪽, “過失相規, 過失, 謂犯義之過六 …”

기를 투전(鬪錢)·도박(賭博)하듯 하는 부류를 말하니, 올바른 사람[其人]이 아닌 이를 사귀면, 행동거지[動作]에 법도[儀]가 없게 되고, 물건이 쓰이는 정도(用度)가 알맞지 않게 된다.”²¹⁾

편의상 저자의 작문 취지에 따라 두 단락으로 나뉘어서 소개한 위의 인용문에서 정규한은 당시 화산의 주민들이 범하곤 했던 다양한 과실의 종류를 아홉 항목으로 정리해서 경계해 보였다. 분쟁·송사(訟事)·주폭(酒暴) 행태와 언행의 문제를 열거한 상반부의 내용이란, 밀접한 소규모의 공간인 향촌 공동체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사안이기여, 이를 우선적으로 환기시킨 것이다. 물론 일부 내용은 율곡의 <증손여씨향약문>의 것을 수용했지만, 내용상의 구성 체계나 간소화 정도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특히 인용문 상반부 말미에서 언급한 ‘영사태심(營私太甚)’ 행태와 더불어, 하반부에서 거론한 교역·관개(灌溉)를 통한 부당 이익의 편취(騙取)나 유희태만(遊戱怠惰) 등과 같은 문제들은 <증손여씨향약문>에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내용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 사안들은 상업과 농업이 크게 발달한 19세기의 시대적 추이로 인해 ‘이익[利]’의 문제가 서민들(communs)의 큰 관심사로 부각하기 시작했던 사회상을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다. 이에 정규한은 급격히 변모하는 시대상에 조용하는 내용들을 새롭게 과실상규 강목에서 보완하는 조치를 취했다만,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저술에서도 적용되었던 시의성(時宜性)의 원리를 존중한 결과인 것이다.

한편 “예속으로 서로 사귀다.(禮俗相交)”고 규정한 세 번째 강목에서 정규한은 기존 율곡의 <증손여씨향약문>의 해당 내용들을 참조하되, 이를 자신 나름의 기준으로 아래처럼 간략하게 전면 재편하였음이 주목된다.

21)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過失相規: 過, 謂忿爭鬪訟, 酗酒肆惡, 行不恭遜, 言不忠信, 造言誣毀, 營私太甚. 謂與人交易, 損人利己, 旱田灌溉, 欲專水利, 遊戲怠惰, 如鬪錢賭博之類, 交非其人, 動作無儀, 用度不節.” 맨 앞의 ‘분쟁투송(忿爭鬪訟)’을 ‘분노하고 다투고 싸우고 송사를 일삼음’으로 해석하곤 하나, 이는 ‘투송’이 독자적인 개념임을 간과한 오역임을 지적해 둔다.

“예속(禮俗)의 사궤(禮)와 어른[長]·어린이[幼] 간의 차례란, 고을 사람으로 20세 이상 연장인 자를 만나면 반드시 절[拜]을 하되, 비록 1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덕행(德行)이 높은 자는 또한 반드시 절하도록 한다. 무릇 적자(敵者)가 서로 만나면, 반드시 공손히 삼가며 읍(揖)을 취한다. 무릇 새해 첫머리에 배하(拜賀)할 적에는 반드시 서로 오고 가며, 관혼상제(冠婚喪葬) 때는 반드시 그 예를 극진하게 하며, 경·조사(慶弔)에 위문 시에는, 반드시 정성껏 부지런히 힘쓴다.”²²⁾

정규한은 윗글에 뒤이어서 가는 글씨[細行]로 “무릇 존장(尊丈)을 길에서 조우했는데, 모두 걸어가고 있다면 빨리 나아가서 절하되, 존장과 함께 말을 나눈다면, (위로 바라보며) 대(對)할 것이다.”²³⁾라는 부연 설명을 추가해 두었다. 정규한은 예속상고에서 ‘예’의 주된 맥락을 오류의 하나인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기준에 입각해서, 고을의 연하·연소자가 20세 연장자·10세 연상·‘적자(敵者)’²⁴⁾·덕행(德行)이 높은 자 및 지위가 높은 존장(尊丈) 등을 상대로 하여 취해야 할 각각의 인사법을 제시하는 것으로 풀이하였다. 이는 향촌 사회에서의 차례나 질서[序]란, 연상·연하 간의 인사 예절을 통해서 유지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계(分界) 설정을 생물학적인 연령의 차이에만 한정할 경우, 성현(聖賢)의 경지나 ‘군자유(君子儒)’²⁵⁾를 지향하는 유학적 전통에 반하게 된다. 이에 정규한은 “덕행(德行)이 높은 자”에 대한 예의 규정을 삼입함으로써, 생물학적·도덕적 세계가 공존하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적절한 균형감을 꾀하는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율곡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나이가 비록 높지 않더라도, 마땅히 존자(尊者)로 대우해야 한다.”²⁶⁾고 규정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다. 한편 여타의 관혼상제

22)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禮俗相交：禮俗之交, 長幼之序, 鄉人年長二十歲以上者, 見之必拜, 雖十歲以上, 德行尊者, 亦必拜, 凡敵者相見, 必揖恭謹, 凡歲首拜賀, 必相往還, 冠婚喪葬, 必盡其禮, 慶弔慰問, 必以恪勤.”

23)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凡遇尊丈於道, 皆徒行則趨進以拜, 尊丈與之言則對.”

24) 율곡의 〈증손여씨향약〉에 따르면, ‘적자’란 “연상·연하(의 차이가) 열 살을 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348쪽): “其三日, 敵者, 謂年上下不滿十歲者, 長者爲稍長, 少者爲稍少.”

25) 朱熹, 『論語集註』, 『第6 雍也』편의 제11장, “子謂子夏曰, 女爲君子儒, 無爲小人儒.”

26) 李珣,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8쪽, “若是師弟子之間, 則年雖不高, 當待以尊者.”

나 경·조사 시에 향인(鄉人)이 취해야 할 예법도 명시했는데, 이는 ‘예속’ 가운데 ‘속(俗)’에 대한 설명에 해당한다. 정규한은 그가 윗글에서 제시한 ‘예·속’을 향민들이 제대로 이행하게 되면, 향촌 사회의 원만한 질서와 미풍양속이 동시에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던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인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돕는다.(患難相恤)”는 강목과 관련하여 정규한은 세세한 설명을 가하지 않는 대신에, 일곱 가지 ‘환난’의 종류만을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정규한이 적시한 환난 목록은 율곡이 ‘환난상휼’ 강목에서 제시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다만, 정규한은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면서 차례대로 환난의 종류를 나열하는 가운데, 각각의 경우에 대한 처방을 아울러 제시한 율곡의 ‘환난상휼’²⁷⁾과는 사뭇 다르게, ‘수화(水火)·도적(盜賊)·질병(疾病)·사상(死喪)·고약(孤弱)·무광(誣枉)[무고]·빈핍(貧乏)[궁핍]’²⁸⁾을 차례대로 나열하는 선에서 그친 특징이 있다. 이처럼 정규한이 환난의 종류만을 언급한 것은, “무릇 구조(救助)의 도(道)는 아래에 보인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²⁹⁾ <향약절목>을 실행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집인 <입약범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처방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강목인 환난상휼 또한 내용의 간명화를 통해서 용이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던 정규한의 입안 의지를 잘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3. <입약범례(立約凡例)>의 구성과 특징

1) <입약범례>의 구성 체계

정규한이 명명한 <입약범례>는 ‘향약절목을 성립케 하는 제반 관례’라는 의

27)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53쪽, “患難相恤：患難之事七，一曰水火，小則遣人救之，甚則親往，多率人救且弔之，若因此絕糧，則僉議以財濟之。二曰盜賊 …”

2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患謂一曰水火，二曰盜賊，三曰疾病，四曰死喪，五曰孤弱，六曰誣枉，七曰貧乏。”

29)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凡救助之道見於下.”

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율곡이 입안한 <해주향약> 속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³⁰⁾ 또한 정규한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향약절목>·<입약범례>는 『향약』1권과 『향의(鄉儀)』1권으로 이뤄진 <여씨향약>의 구성 체계를 계승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에 정규한은 앞서 제시한 <향약절목>을 실질적으로 기능케 하는 세부적인 규정집의 성격을 띤 <입약범례>를 순차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향촌 공동체 자치 구상을 완료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다.

외형상 <입약범례>는 총 16항목으로 이뤄진 ‘약조(約條)’³¹⁾[곧 세칙]와 이 세목들에 관한 철학적 근거와 궁극적 전망을 천명한 단락, 그리고 약조를 위반했을 때 적용하는 처벌 규정인 ‘벌목(罰目)’을 맨 뒤에 덧붙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정규한은 첫 번째 순서로 배정한 ‘일(-)’ 조항을 통해서 연중 발휘되는 입약(立約)의 전개와 그 대체를 제시하였기에, 실제로 <입약범례>는 각기 다른 네 층위의 내용들을 망라한 구성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정규한이 입안한 <입약범례>는 율곡이 제창한 <입약범례>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략한 분량이지만, 19세기를 전후로 한 화산 지역의 공간적·시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흔적들이 역력하게 감지된다. 일단, 이 지점에서 정규한이 첫 번째 순서로 내세운 세칙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봄·가을에 날을 가려서, 약내(約內)의 여러 구성원들은 제회(齊會)를 행한다. 봄에는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거행하고, 가을에는 향사례(鄉射禮)를 행하면서, 약문(約文)[향약절목]을 낭독한다.”³²⁾

봄·가을 두 계절에 제원(諸員)들이 제회를 통해서 각기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거행하고, 향약절목을 읽도록 규정한 제1조항은 전래의 독약례(讀約禮)의

30)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海州鄉約>, 344쪽, “立約凡例：一, 初立約時 …” 김재(儉齋) 김유(金株, 1653~1719)도 <해서향약>에서 율곡의 조어(造語)를 원용했다. 『儉齋集』卷29(한국문집총간 續50), 『雜著』, <海西鄉約>(민족문화추진위원회, 2006), 596쪽, “立約凡例：一, 衆推一人爲約長 …”

31)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大凡約條如右.”

32)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一, 春秋卜日, 約內諸員齊會, 春行鄉飲酒禮, 秋行鄉射禮, 讀約文.”

식을 계승한 것으로, 화산 지역민이 공유하는 향약에 대한 중간 점검과 화합·유대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독약례는 유교의 선성(先聖)에 대한 배례(拜禮)를 비롯하여 존상자(尊上者)에 대한 복잡한 배의(拜儀), 향약 조문의 낭독 및 해설, 그에 뒤이은 설서(說書)나 습사(習射)·강론(講論)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³³⁾ 한편 호남의 칠성현의 경우, “고을 사람들이 향음주례를 행하기를 좋아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³⁴⁾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봄·가을에 각기 향음주례와 향사례를 나눠서 시행토록 규정한 정규한의 <입약범례>는 향인의 유대와 화합을 좀 더 숙고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규한은 제1조항의 말미에 작은 글씨로 아래와 같은 규정을 덧붙여 두기도 하였다.

“무릇 약문(約文)을 낭독할 때 (나이가) 칠순인 자들이 한 자리[一位], 예순인 자들이 한 자리, 쉰인 자들이 한 자리, 마흔 이하인 이들이 한 자리로 해서, 차례대로 서서 서로 읊례(揖禮)를 취하고, 약문을 낭독한 뒤에, 칠순 이하는 모두 두 번 절한다.”³⁵⁾

정규한은 위의 인용문 외에도 “무릇 선악(善惡)을 기록하는 장부[籍]는 공원(公員)이 주관한다.”³⁶⁾는 별도의 규정을 명기해 둔 대목도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 장면은 처벌 규정을 제시한 <입약범례>의 말미의 벌목과 연계된 가운데, 정규한이 입안한 약조가 강한 권선징악의 기조(基調)를 띠고 있을 것임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악을 각기 선적(善籍)과 악적(惡籍)에 기록해 했던 전통이란, 멀리 <여씨향약>과 이를 계승한 <주자증손여씨향약>으로까지 그 연원이 소급된다.³⁷⁾ 한편 춘추 제회 시의 좌석 안배에 대한 지침이

33) 이근명, 『朱熹의 <增損呂氏鄉約>과 朝鮮社會 - 朝鮮鄉約의 特性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중국학보』45(한국중국학회, 2002), 278쪽.

34) 鄭奎漢, 『華山集』卷5, 『記』, <龍安縣監李侯銓去思閣記>, 395쪽, “七城縣 … 謹按輿誌, 邑人好行鄉飲酒禮.”

35)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凡讀約文時, 七十者一位, 六十者一位, 五十者一位, 四十以下一位, 序立行相揖禮, 讀約文後, 七十以下, 皆再拜.”

36)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凡置善惡籍, 公員主之.”

37) 郭齊·尹波 校点, 『朱熹集』卷4, 『雜著』, <增損呂氏鄉約>(成都: 四川教育出版社, 1996), 3912쪽, “於是約中有善者, 衆推之, 有過者, 直月糾之 … 直月遂讀記善籍一過, 命執事以記過籍, 徧呈在坐, 各默觀一過.”

드러나 있는 윗글은, 애초 ‘장유(長幼)의 차례[序]’를 통해서 예속상고를 이행하려 했던 정규한의 의도를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선악 장부를 담당하는 공원 외에도, <입약범례>의 실행을 위해 “각 리(里)마다 상별검(上別檢) 한 사람, 하읍장(下色掌) 1인을 둔다.”³⁸⁾고 기록되어 있다. 이로써 화산 지역의 경우, 앞서 소개한 ‘도약헌(都約憲) 1명·부약헌(副約憲) 2명·장의(掌儀) 1명·공원(公員) 1명·유사(有司) 2명·색장(色掌) 1명’³⁹⁾과 ‘상별검·하읍장’ 2명으로 이뤄진 직임을 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임원들은 이하의 제15조항에서 각기 일정한 역할들을 맡게 되므로, <입약범례>와 직임들 간의 유기적인 연관 체계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면 총 16조항으로 이뤄진 <입약범례>가 어떠한 방식으로 <향약절목>의 정상적인 이행에 기여하도록 입안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 관련 범례

약 2쪽 분량인 율곡의 <입약범례>의 구성에 비해서 정규한의 그것은 상당히 소략한 반면에, 화산의 지역적 특성과 시대적 추이에 알맞은 내용들로 이뤄져 있어 현장성과 실용성을 보다 강화시킨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향약절목>에 제시된 네 강목인 덕업상권·과실상규·예속상고·환난상휼의 경우, 각기 상이한 덕목의 이름을 부여하였지만, 공히 도덕·윤리의 세계를 강력히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상의 좌표에 배치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규한이 총 16조항으로 세분화시킨 <입약범례> 또한 그 경계가 중복되는 사례들이 많은 까닭에, <향약절목>과의 명료한 배대(配對)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예컨대 너무나 다양한 범례들을 결집시킨 제6조항의 경우는 네 강목 모두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⁴⁰⁾ 기실 율곡이 1571년

3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各里有上別檢一員, 下色掌一人)>, 406쪽.

39) 각주 5) 참조.

40)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407쪽, “一, 謗訕朝政, 非毀官長者, 不動納租賦公穀者, 喜言人過惡, 好論人長短者, 以富吞貧者, 以惡凌善者, 上以非理暴下者, 下以非理凌上者, 侵奪他人及山僧之物者, 不順從上典教令者, 次上罰.”

(선조 4)에 청주(淸州)의 서원에서 시행한 <서원향약(西原鄉約)>의 ‘조목(條目)’에도 네 강령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는 상태다.⁴¹⁾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방편상, 각기 두 종류의 강목과 <입약범례>의 해당 내용들을 결속시키는 논의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먼저, 강목의 순서에 따라 덕업상권과 과실상규를 뒷받침해 주는 <입약범례>의 규정들을 추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정규한이 제시한 <입약범례>의 경우, 간소한 분량으로 인해 대체로 네 강목의 순서에 준하여 열 다섯 조항들을 차례대로 열거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덕업상권·과실상규와 관련된 내용들은 주로 전반부에 제시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정규한은 선악의 문제에 대한 처리 방침과 함께, 자신의 학적 강령인 효제(孝悌) 철학과 관련한 내용들을 매우 중시한 특징이 아울러 포착된다. 이를테면 아래의 제2조항은 지적인 사안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구체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무릇 선악(善惡)의 도(道)를 기록하되, 효행이 무리[等夷]에서 출중하거나, 우애[友]·공경심[弟]에 깊고 지극하며, 덕행이 비범[超凡]한 이들은 장부에 기록하도록 한다. (또) 만약 강상(綱常)에 죄를 범하거나, 명분(名分)과 풍화(風化) 등의 일에 크게 관련된 자들도 반드시 장부에 기록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허물들은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다.”⁴²⁾

정규한은 선의 범주인 ‘효행·우제(友弟)·덕행’과 그 대척점인 ‘강상·명분·풍화’에 정면으로 반하는 악행을 명쾌하게 구분하는 방식을 통해서, 권선징악의 교육적 효과로 유도하는 일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을 엿글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나열된 ‘효행·우제(友弟)·덕행’과 ‘강상·명분·풍화’란 내

41)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西原鄉約>, 342~343쪽 참조.

42)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一, 凡記善惡之道, 孝行出于等夷, 友弟深至, 德行超凡者, 記于籍, 若罪犯綱常, 大關名分風化等事, 必記于籍, 其餘細瑣之過, 不必記.” 인용문 속의 ‘등이(等夷)’란 나이나 신분이 비슷한 부류를 말한다.

용상 동의어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뿐더러, 모두 “장부[籍]에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율글은 덕업상권·과실상규 두 강목을 동시에 겨냥한 규정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조항에서 “선행[善]을 한 자가 있으면, 춘추 회집(會集) 시에, 유사(有司)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읍(揖)하게 하고, 무리들 가운데서 나오게 하여, 앞쪽에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대중들이 모두 추장(推獎)토록 하고, 또 권면(勸勉)할 일에 포함시킨다.”⁴³⁾고 규정한 조항도 동일한 범주에 포함된다.

나아가 정규한은 네 번째 세칙을 통해서 “재물[貨財]을 좋아하고 처자(妻子)를 사사로이 하여, 부모의 봉양을 돌보지 않거나, 투전(鬪鬪)·도박(賭博)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며, 성이 나 다투고 심하게 싸워서 부모를 위태롭게 하는” 등의 패륜적 작태들을 열거하는 가운데, 이들이 끝내 개과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봄·가을에 열리는 회집 때 “향약[約]에서 내쳐 절교할 것”을 명시해 두기도 하였다.⁴⁴⁾ 제재권이 부재했던 까닭에 소기의 실효가 난망했던 <주자증손여씨향약>과는 달리, 화산 향약의 경우 동약(同約)의 이름으로 강력한 처벌권을 행사함으로써, 분명한 교화의 결실로 인도하게끔 조처한 점이 크게 눈길을 끌게 한다. 특히 네 번째 조항에서 특정한 사례들에 한해서 ‘출약(黜約)’토록 조처한 것은, 율곡이 <서원향약>을 통해서 “관[官]에 보고하여 죄(罪)를 다스린 뒤에 향리에서 내쫓는다.”고 한 ‘출향(黜鄉)’ 조처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 주목된다.⁴⁵⁾ 이는 정규한이 범례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반 선행 선례들을 두루 참조했을 것임을 짐작케 해준과 동시에, 그가 제시한 <입약범례>가 ‘관[官]’로 칭한 국가 권력을 대체할 정도의 강한 구속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한편 정규한은 덕업상권·과실상규 범주에 다음 강목인 예속상교의 맥락까

- 43)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406쪽, “一, 有爲善者, 春秋會集時, 有司起揖其人, 出于衆中, 設別座于前, 衆皆推獎, 且加勸勉事.”
- 44)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406쪽, “一, 好貨財私妻子, 不顧父母之養, 鬪鬪賭博, 不聽父母之訓, 忿爭鬪狠, 以危父母, 與父母變色相詰者, 不遵父母教令者, 春秋齊會時, 招而曉諭, 自請改過者, 許其自新, 再三諭之而終不悛改者, 黜於約而絕之.”
- 45) 李珣, 『栗谷全書』I卷16, 『雜著』3, <西原鄉約>, 342쪽, “一, 憚於修飭, 不欲參約, 或違約作過, 終不悛改者, 報官治罪後黜鄉.”

지를 가미시킨 범례를 입안하기도 했다. 예컨대 삼촌·당숙·외삼촌 및 동생·사촌형에 대한 태도와 함께, 상·제례 때 견지해야 할 올바른 태도를 동시에 제시한 아래의 인용문을 그 하나의 사례로 지목할 수 있다.

“삼촌 숙부 및 동생을 꾸짖으며 욕하는 자, 상중(喪中)에 있으면서 술에 취하고 제사(祭祀)에 불경(不敬)한 자, 5촌 숙부 및 외삼촌·사촌형을 꾸짖으며 욕하는 자는 상벌(上罰)에 처한다.”⁴⁶⁾

윗글은 부모 외에 긴밀한 인적 관계들에 대해 질욕죄(叱辱罪)를 자행하고, 또 거상(居喪)·제사 시에 불경죄를 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벌에 처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참고로 정규한은 언급한 ‘상벌’과 관련해서 “사류(士類)는 별도로 가장 아래 자리에 앉게 해서, 복을 올려 벌(罰)을 받게 하고, 하인(下人)은 불기를 40번 치게 한다.”⁴⁷⁾는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제시해 두었다. 이처럼 사족층과 하인 간의 처벌 규정을 구분한 점도 눈에 띄지만, 특히 하인을 향약에 동참시킨 사실이 이채롭게 느껴진다. 물론 정규한의 경우, “세도(世道)가 하강[降下]하고, 풍교(風教)는 날로 쇠하여, 분수[分]를 범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폐단이, 곧 늘 다만사가 된 끝에, 하인과 장리배(將吏輩)들이 이를 범하곤 한다.”는 당대 시국 인식에 드러난 바대로,⁴⁸⁾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신분제를 옹호했던 인물이다. 참고로 양반을 대상으로 하여 사서(士庶) 병존(竝存)의 토대 위에서 시행된 읍곡의 <해주일향약속(海州一鄉約束)>⁴⁹⁾의 경우, 하인은 전향민(全鄉民)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화산 향약과 <해주일향약속> 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를테면 정규한이 주도한 화산 향약의 경우, 향촌 단위에서 양반들이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46)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406쪽, “一, 叱辱三寸叔父, 及同生兄者, 居喪醉酒, 祭祀不敬者, 叱辱五寸叔父及外三寸從兄者, 上罰.”
 47)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407쪽, “上罰, 士類則別坐末端, 鳴鼓擗罰, 下人笞四十.”
 4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407쪽, “世道降下, 風教日頹, 犯分陵上之弊, 便作常茶飯, 下人及將吏輩, 有犯於此.” 운위된 ‘장리배(將吏輩)’의 ‘장리’란 수령이 죄인을 잡으려고 포교와 사령을 많이 보내는 일을 지칭하는 다발장리(多發將吏)의 준말로, 허술·서리를 말한다.
 49) 이근명, 앞의 글, 288쪽.

의도로 “귀천을 헤아리지 않는[不計貴賤]” 상하합계(上下合契) 형식의 동계(洞契)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⁵⁰⁾

그런가 하면 “사류(士類)가 만약 먼저 그 도(道)를 상실하여, 하인에게 욕(辱)을 당한 자가 있다면, 제회(齊會) 시에 제원(諸員)들이 그 곡직(曲直)을 분별하여, 벌 받을 일을 참작(參酌)한다.”는 세칙도 곱씹을 만한 여지를 제공해 주고 있다.⁵¹⁾ 물론 이는 향촌을 다스리는 주체 세력인 양반이 하층민을 토색 질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반영된 것이나, 하인 계층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을 정도의 권리가 부여된 측면도 엄존하기 때문이다. 물론 “죄(罪)를 범한 경중(輕重)의 구별에 있어” 가장 아래인 하벌(下罰)의 경우도 “사류(士類)는 주벌(酒罰)[벌주]를 행하고, 하인은 볼기 14대를 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⁵²⁾ 귀천의 차이에 따른 엄격한 신분 규정에서 결코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류는 가장 아래 자리에 앉아 책임 추궁(規責)을 받고, 하인은 볼기 20개를 친다.”⁵³⁾고 규정한 중벌(中罰) 규정 또한 현격한 신분적 차이를 감지케 해준다. 정규한이 <입약범례>의 제6항 말미에 “상전(上典)[주인]의 교령(敎令)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차상벌(次上罰)에 명한 것⁵⁴⁾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정규한은 “상(上)이 도리에 어긋나게 아랫 이[下]에게 사납게 구는 자, 아랫 이가 도리에 맞지 않게 윗사람을 업신여기는 자, 타인 및 산승(山僧)의 물건을 침탈(侵奪)하는 자”에게도 차상벌을 적용하였음이 주목된다.⁵⁵⁾ 왜냐하면 이 규정은 도리[理]에 입각한 상호 간의 관계를 존중한 합리적인 인식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처지에 놓여 있었

50) 朴京夏, 『朝鮮中期 鄉村支配組織에 관한 研究 - 鄉規 · 洞契를 中心으로 -』, 『국사관논총』59집(국사편찬위원회, 1992), 197~202쪽.

51)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士類若有先失其道, 被辱於下人者, 齊會時諸員辨其曲直, 參酌論罰事.”

52)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於戲, 世道降下 … 而罪犯有輕重之別 … 下罰, 士類行酒罰, 下人笞一十.” ‘하벌’ 조항은 “사류(士類)는 별도로 앉아서, 면전에서 술로 행하는 벌로써 꾸짖고, 하인은 볼기 30대를 친다.”는 차상벌(次上罰) 규정을 다소 완화한 것이다.(407쪽): “次上罰, 士類則別坐, 面責以酒行罰, 下人笞三十.”

53)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中罰, 士類則坐末端以受規責, 下人笞二十.”

54)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 不順從上典敎令者, 次上罰.”

55)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 上以非理暴下者, 下以非理凌上者, 侵奪他人及山僧之物者 … 次上罰.”

던 승려(僧侶)를 배려한 고심이 감지되기 때문이다.⁵⁶⁾

그런가 하면 “조정(朝政)을 헐뜯거나 비웃고, 관장(官長)을 비난하는 자와 조부(租賦)·공곡(公穀)을 성실히 납부하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상벌(次上罰)을 적용할 것을 규정했는데,⁵⁷⁾ 이 조항은 삼정(三政)의 문란이 가속화되면서 조정과 지방 관아의 권위가 실추되기 시작했던 시대상을 감지케도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富)로써 가난한 이를 짊어 삼키는 자와, 악으로써 선한 이를 업신여기는 자”에게도 차상벌을 적용했던 것도,⁵⁸⁾ 경제적 빈부와 도덕적 선악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던 당시 사회상의 일단을 엿보게 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앞의 인용문에서 상·제례 시의 태도를 거론한 것은, 덕업상권·과실상규에 이어서 예속상교와 관련된 범례들을 나열할 것임을 암시해 준다. 물론 앞에서 논급한 바대로, 덕목과 범례 간에 일대일 식의 정합적인 배대가 이뤄지진 않았다. 이를테면 “술에 취해서 꾸짖고 욕하는 자, 종족(族) 간에 잘 화목하지 못해 서로 더불어 싸우고 따지는 자, 언어가 참되지 못해 타인을 속이고 헐뜯는 자, 의론이 공정치 못해 시비의 실마리(關端)를 끌어 일으키는 자들은 중벌(中罰)을 행한다.”고 규정한 제7조의 경우도 덕업상권·과실상규 및 예속상교 세 강목과 동시에 관련되어 있다.⁵⁹⁾ 따라서 제한된 지면상의 사정을 감안해서 예속상교와 환난상효를 지탱해 주는 세칙들 가운데 보다 특징적인 조항들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56) 임정한 정주학자로서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견지했던 정규한의 불교관에 대해서는 김종수, 「화산 정규한의 불교 인식」, 『공존의 인간학』7(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2022), 205~239쪽 참조.

57)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407쪽, “一, 謗訕朝政, 非毀官長者, 不動納租賦公穀者 … 次上罰.”

5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 以富吞貧者, 以惡凌善者 … 次上罰.”

59)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醉酒詬罵者, 不能睦族, 相與鬭詰者, 言語不實, 誣毀他人者, 論議不公, 惹起鬭端者, 行中罰.” 제7조의 일부 내용은 “남의 지난 악행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장·단점 논하기를 좋아하는 자(喜言人過惡, 好論人長短者)”를 차상벌에 처하도록 한 제6조의 규정과도 상통하는 맥락이다.(406~407쪽)

3) 예속상교(禮俗相交)와 환난상휼(患難相恤)의 경우

정규한은 예속상교에 해당하는 세칙으로 제사와 상·장례 때 지켜야 할 범 절들을 다섯 조항으로 나눠서 제시하였고, 후자인 환난상휼과 관련하여 약조의 후미 부위에 복수의 항목들을 나열해 두었다. <입약범례>의 말미의 서너 조항들은 집회와 임원들에 대한 세칙에 해당하므로, 제12조항에서 네 강목과 결속된 범례가 마무리되고 있다. 읍곡의 <입약범례>에 비해서는 정규한의 그것은 다소 소략한 분량이나, 화산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시킨 실용적인 구성 체계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예속상교·환난상휼 두 강목에 관여하면서, 직임들의 역할까지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는 제8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한다.

“약내(約內)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 상고(喪故)를 만나는 자가 있으면, 해당 마을의 하색장(下色掌)은 부고[訃]를 각 마을의 별검(別檢)에게 통보하면, 무릇 이름을 위임한 사람들이 있어, 모이면 즉각 나이가 조의[弔]를 표하고, 제힘에 알맞게 구조 하되, 부근의 마을 사람들부터 또한 힘에 맞게 돌보아 돕도록 한다. 동약(同約)의 사람들은 장례(襄禮)와 소(小)·대상(大祥) 시에도 모두 가서 위문(慰問)하도록 한다.”⁶⁰⁾

정규한은 위의 인용문에 곧바로 이어서 “만약 하인(下人)이 상(喪)을 당하면, 본 마을부터 각자가 빈 석(空石) 1립(立)을 내어, 구조하는 일을 한다.”고 명시해 둬으로써,⁶¹⁾ 당시에 하인들도 “향약을 공유하는[同約]” 구성원의 자격을 부여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어쨌든 윗글은 상·장례를 치르는 향약 구성원에 대한 조의·부조·위문이 직임자인 하색장·별검과 연계된 채 드러나 있어, 예속을 도모하고 ‘사상(死傷)’⁶²⁾[상·장례]으로 대변되는 환난에

60)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約內諸員中, 有遭喪故者, 該里下色掌, 通訃于各里別檢, 則凡有任名之人, 趁卽赴吊, 隨力救助, 自附近里, 亦隨力顧助, 同約之人, 襄禮小大祥時, 皆往慰問.”

61)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若下人遭喪則自本里各出空石一立, 以救助事.”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했던 정규한의 입안 의지를 엿보게 해준다. 나아가 정규한은 여타의 환난 사태인 ‘수화(水火)·도적(盜賊)·질병(疾病)’ 등을 만났을 때 직임의 역할과 연계된 또 다른 대처 방안을 제10 조항을 통해서 아래처럼 제시해 두기도 하였다.

“약내(約內)에 흑여 과실로 인한 실화(失火)가 발생한 끝에, 가사(家舍)[집]며 재물(財)·곡물(穀) 등이 죄다 불타버렸다면, 해당 리(里)의 하색장이 각 리의 별검에게 달려가서 알리면, 동약(同約)의 구성원들은 재목(材木)과 곡물(穀物)로 제힘에 맞게 돌보아 도와주도록 한다. 만약 도적·질병 등과 같은 사태[事]가 발생하면, 마땅하게 잘 헤아려서 돌보아 도와주는 일을 한다.”⁶³⁾

또한 윗글의 연장선에서 정규한은 “마을에서 우고(憂故)[상(喪)]로 농사를 폐한 자가 있다면, 마을 사람들 각자는 진력[出力]해서 논밭을 갈고 김을 매서 구조하는 일”⁶⁴⁾을 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눈길을 끌게 한다. 특히 이 조항은 하인을 동참시킨 대목 및 상기 인용문과 함께, 정규한이 입안한 화산 향약이 궁벽진 향촌의 특성을 잘 반영시킨 결과, 19세기를 전후로 하여 이른바 ‘조선 향약’⁶⁵⁾의 새로운 전범을 개척해 보였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환난상훈과 관련된 세칙들은 화산 향약이 전래의 계(契) 조직의 기능까지도 아울러 수행함으로써, 위기 시에 동약(同約) 구성원들 상호 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안된 점이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향촌 사회 내에서 훈훈한 미풍양속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예속상교·환난상훈과 관련된 세칙들이 서로 착종(錯綜)되는 식의 입안이 이뤄졌던 듯하다. “상(喪)·장례[葬] 시에 화재(火災)가 났음에도, 약중(約中)의 사람들이 무심한 듯 구원하지 않는다면, 또한 별

62)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鄉約節目〉, 406쪽, “患難相恤：患謂一日水火 … 四日死喪 …”

63)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約內或有失火, 盡燒家舍及財穀者, 該里下色掌, 奔告于各里別檢, 則同約之人, 材木穀物, 隨力顧助, 若有盜賊疾病等事, 量宜顧助事.”

64)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里中有憂故廢農者, 里人各出力耕耘以救助事.”

65) 車勇杰, 『鄉約의 成立과 施行科程』, 『한국사론-조선전기 서원과 향약-』8(국사편찬위원회, 1980), 204~205쪽. 차용걸이 평한 ‘朝鮮鄉約’이란 선조대에 이르러 퇴계와 율곡이 기존 주자의 〈증손여씨향약〉을 초극해서 한국적 특수성을 지닌 향약을 성립시킨 것을 말한다.

받을 일[罰事]을 의논한다.”⁶⁶⁾고 규정한 세칙 역시 재화(災禍)와 같은 환난의 사태에서 발휘해야 할 향민들의 자발적인 구조에의 의무에 대한 구속력을 보다 강화시킨 것이다.

한편 정규한은 그가 <향약조목>의 환난상휼 강목에서 제시한 일곱 부류의 환난인 ‘수화(水火)·도적(盜賊)·질병(疾病)·사상(死喪)·고약(孤弱)·무왕(誣枉)·빈핍(貧乏)[궁핍]’⁶⁷⁾ 중에서, 특별히 ‘무왕’과 이와 유사한 ‘횡역(橫逆)’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동약(同約)의 구성원들[人]”이 취해야 할 태도를 엄준한 논조로 규정하는 것으로 환난상휼과 관련한 마지막 범례를 제시하였다.

“향약을 공유한[約中]한 사람들 중에, 혹여 무고[誣]·모함[枉]을 당했거나, 혹 몇 몇한 이치에 어그러지는 일[橫逆]을 당했다면, 동약(同約)의 구성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관[官]에 고하여,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펴서 다스리고 징계하여 다스리는 도리[道]를 다해야 함에도, 만약에 칭탁(稱托)함이 있거나, 사사로운 정(情)을 두어 나오지 않는 자는 또한 벌(罰) 받을 일을 의논토록 한다.”⁶⁸⁾

정규한이 율글을 통해서 ‘무왕(誣枉)·횡역(橫逆)’을 거론한 이유는 두 사안 모두 원옥(冤獄)이나 형륙(刑戮)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면서, 공동체의 화합을 심히 저해하는 음해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규한은 상벌(上罰)과 ‘차상벌(次上罰)·중벌(中罰)·하벌(下罰)’ 등으로 나뉜 자체적인 벌목(罰目)을 적용함과 동시에,⁶⁹⁾ 또한 “관[官]에 고하여 신리(伸理)·징치(懲治)하는 도리를 다하는” 두 종류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후자는 앞서 논급한 율곡의 “관[官]에 보고하여 죄(罪)를 다스린다.”고 규정한 부분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다. 일찍이 율곡도 “죄 없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66)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喪葬火災, 約中之人, 忽然不救則亦爲論罰事.”

67) 각주 28) 참조.

6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約中人, 或被誣枉, 或遭橫逆者, 同約之人, 齊聲告官, 以爲伸理懲治之道, 而若有稱托, 挾私不出者, 亦爲論罰事.”

69)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罰目: 上罰 … 次上罰 … 中罰 … 下罰, 士類行酒罰. 下人答一十.”

무왕(誣枉)을 당하여, 장차 형법에 따라 죽임을 받게 될 지경이면, 동약인[同約]은 연명(連名)으로 관아에 보고해서 신리(伸理)한다.”는 조목을 제시한 바가 있다.⁷⁰⁾ 이에 추가해서 정규한은 “마땅히 관아[官]에 보고해서 법령[律]에 의탁하는” 또 다른 사례를 아래처럼 적기해 두기도 하였다.

“하인과 장리(將吏) 무리들이 이[범분(犯分)·능상(陵上)]를 범한다면, 각 리(里)의 별검(別檢)은 유사(有司)에게 통보하고, 유사는 도약헌(都約憲) 및 장의(掌議)에게 통보하여, 일제히 엄히 다스리되, 죄를 범함이 경중(輕重)의 구별이 있어, 심한 것은 마땅히 관아[官]에 보고해서 법령[律]에 의탁하도록 한다.”⁷¹⁾

윗글에는 “하인과 장리배(將吏輩)들이 분수를 범하고 윗 사람들을 능멸하곤 함으로써, 세도(世道)와 풍교(風敎)가 급격하게 강퇴(降頹)하기 시작했던 19세기를 전후로 한 시대를 바라보는 정규한의 우려 섞인 시선이 잘 노정되어 있다. 이에 정규한은 별검·유사·도약헌·장의로 이어지는 직임들의 체계를 통해서 가능한 자체적인 벌목에 입각해서 범죄자들을 엄치(嚴治)하되, 중범죄에 한해서는 국가 권력을 요청하도록 하는 이중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소개한 ‘무왕(誣枉)·횡역(橫逆)’ 사태와 함께, ‘범분(犯分)·능상(陵上)’으로 칭한 하극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정규한의 질서 관념이 얼마나 철저했던가를 여실히 방증해 주고 있다. 또한 정규한이 최종적인 엄치 수단으로 “관아[官]에 보고해서 법령[律]에 의탁하는” 극약 처방을 제시했던 이면에는, 역으로 이 같은 규정이 <입약법례>와 자체적인 벌목에 대한 향민의 준수 의지를 더욱 고취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원려(遠慮)의 소산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정규한의 경우, 동약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도덕감에 호소하거나, 혹은 사태의 경중에 따라 네 부류의 벌목을 적용하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격

70) 李珥, 『栗谷全書 I』卷16, 『雜著 3』, 〈西原鄉約〉, 342쪽, “條目: … 一, 無罪之人, 橫被誣枉, 將受刑戮, 則同約連名, 報官伸理.”

71)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於戲, 世道降下, 風敎日頹, 犯分陵上之弊, 便作常茶飯下人及將吏輩, 有犯於此, 則各里別檢, 通于有司, 有司通于都約憲及掌議, 齊聲嚴治, 而罪犯有輕重之別, 甚者則當告官依律.”

인 법령에 의뢰하는 등의 도덕적·별목적·사법적 수단들을 다채롭게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화산 향약이 원만하게 이행되는 결실로 인도되게끔 세칙들을 기획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순서로 <입약범례>에 명기된 집회[會集]와 직임 혹은 임원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과 함께, 또 화산 향약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했던 비전과 관련된 정규한의 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회집(會集)·직임(職任) 규정과 화산 향약의 비전

여타의 선행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정규한이 입안한 화산 향약에서도 “동약(同約)의 구성원들[人]”이 모두 모여 의식을 거행하는 회집과 함께, 향약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직임들에 대한 규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이에 정규한도 <입약범례>의 후미 부위를 빌려서 “회집(會集) 시”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시하였고, 또 별도의 단락을 통해서 그가 입안한 화산 향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내외에 천명해 두었음이 주목된다. 일단, 전자와 관련하여 정규한은 <입약범례>의 제1조항에서 봄·가을 두 번에 걸쳐서 회집을 행할 것을 우선적으로 명시해 두었다. <여씨향약>의 경우 ‘독약례(讀約例)’⁷²⁾로 지칭했던 세칙, 즉 “봄·가을에 날을 가려서, 약내(約內)의 여러 구성원들은 제회(齊會)를 행한다. 봄에는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거행하고, 가을에는 향사례(鄉射禮)를 행하면서, 약문(約文)을 낭독한다.”⁷³⁾고 제시한 대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처럼 향민 상호 간에 화합과 유대를 도모하고, 약문 낭독을 통해서 네 강목에 대한 구성원들의 교화(indoctrination)가 이뤄지는 회집에 “동약

72) 申體仁, 『晦屏集』卷6(한국문집총간 續93), 『雜著』, <讀書謬錄>(한국고전번역원, 2010), 270쪽, “呂氏鄉約, 月朝集會讀約禮, 是實本於鄉飲酒禮, 而其禮約而易行, 亦足以寓行通講之禮.”

73)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6쪽, “一, 春秋卜日, 約內諸員齊會, 春行鄉飲酒禮, 秋行鄉射禮, 讀約文.”

(同約)의 구성원들이 참여치 않으면, 정상적인 향약의 이행이 곤란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정규한은 향민들에게 회집 날짜를 공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무릇 회집을 알리는 회문(廻文)은 유사(有司)가 이를 도맡아, 차차로 각 리(里)의 하색장에게 전해서, (회집하는) 일을 차례대로 알린다.”는 연락 체계를 명시해 둠으로써,⁷⁴⁾ 유사·하색장·향민으로 이어지는 긴밀한 연락망을 구축해 둔 사실이 확인된다. 나아가 정규한은 제13조항을 통해서 회집에 응하지 않는 구성원들에 대한 두 종류의 규정을 아래처럼 마련해 두었음이 자못 눈길을 끌게 한다.

“회집(會集) 시에 혹여 실제로 연고[實故]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자제나 하색장(下色掌)으로 하여금 단자(單子)[문서]를 갖추어서 보고하도록 한다. 만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참하는 자는, 반드시 벌 받을 일을 의논토록 한다.”⁷⁵⁾

정규한은 위의 세칙을 통해서 봄·가을 두 번에 걸친 회집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사태를 예방함으로써, 화산 향약의 기본적인 성립 요건을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이와 동시에 정규한은 ‘도약헌(都約憲) 1명·부약헌(副約憲) 2명·장의(掌儀) 1명·공원(公員) 1명·유사(有司) 2명·색장(色掌) 1명’과 함께, 리(里) 단위의 ‘상별검(上別檢)·하읍장(下色掌)’ 1인⁷⁶⁾으로 구성된 직임들의 공정성과 도덕적 과실의 문제에 대해서도 예의 숙고했던 것 같다. 특히 정규한은 이들 8인 중에서도 실무 책임자인 유사와 향약의 최고 책임자인 도약헌·부약헌의 잘못된 행동거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했음을 아래의 두 조항은 확인시켜 주고 있다.

“만약에 유사(有司)가 불공(不公)·부정(不正)함이 있다면, 공정[公]에 빗대어 사

74)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凡會集廻文, 有司掌之, 次次傳于各里下色掌, 輪示事.”

75)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會集時或有實故不參者, 必使子弟或下色掌, 具單子以告, 若無故不參者, 必論罰事.”

76)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各里有上別檢一員, 下色掌一人)〉, 406쪽.

육을 채우려는 자를 교체[改]하도록 한다.”⁷⁷⁾

“도약헌(都約憲)에게 과실이 있다면, 부약헌(副約憲)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부약헌에게 과실이 있다면, 도약헌이 교체토록 한다.”⁷⁸⁾

앞의 인용문은 실무진인 유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문제가 향약을 시행하는 도정에서 중요한 사안임을 방증해 주고 있다면, 뒤의 조항은 최고 책임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의 문제가 향약의 성공을 가늠하는 일대 관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교훈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에 정규한은 도약헌과 부약헌 두 사람 간에 상호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하도록 재촉하는 안목을 발휘한 것이다. 여타의 임원들에 대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것은, 이미 논급한 바와 같이 위의 세척들을 통해서 나머지 5인들에 대한 역할들을 미리 규정해 두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화산 향약은 <향약절목>에서 제시한 네 부류의 강목들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집인 <입약범례>를 마련한 가운데, 두 차례에 걸친 회집을 위한 세척과 유사·도약헌·부약헌의 공정성·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조항을 선보임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른바 ‘향약보급운동’⁷⁹⁾이 왕성하게 펼쳐졌던 1519년(중종 14)에 당시 영사(領事)였던 이요정(二樂亭) 신용개(申用漑, 1463~1519)에 의하면, “향약을 시행하는 곳에는 사송(詞訟)도 줄고 풍속도 점차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는 정황 보고를 국왕인 중종(中宗)에게 주달(奏達)한 사실이 있다.⁸⁰⁾ 이 언술로써 미뤄보건대, 후속 기록이 부재한 화산 향약의 경우도 상당한 교화의 결실을 거두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77)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有司若有不公不正, 憑公逞私者, 改之.”

78)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一, 都約憲有過, 則副約憲改之, 副約憲有過, 都約憲改之.”

79) 李泰鎮,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16세기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한국문화』4(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83), 8~16쪽.

80) 『中宗實錄』卷35, 14년 4월 5일(戊辰), “戊辰, 御朝講 … 領事申用漑曰, 臣頗聞行鄉約之處, 則詞訟亦止, 風俗漸美.” 곁하여 정인 이인은 모계 김안국(1478~1543)이 거둔 성공적인 사례를 이하처럼 보고하기도 하였다. “전에 김안국이 감사로 있을 적에 군·읍에 향약을 시행하자 풍속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正言李認曰, 前者, 金安國爲監司時, 行鄉約于郡邑, 風俗化而爲美).”

그렇다면 정규한은 과연 어떠한 철학적 토대와 전망 하에서 화산 향약을 구상했던 것일까? 이처럼 중요한 도덕·정치철학적 사안과 관련하여 정규한은 <입약범례>의 말미 지면을 빌려서, 그가 기획한 화산 향약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 철학적 근거를 아울러 천명해 두었음이 대단히 주목된다.

“무릇 우리 동약자(同約者)들은, (절목과 범례를) 삼가고 부지런히 힘쓰며 좇아서 행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니, 사람의 대도(大道)는 효성[孝]·공경[悌]하는 것만 못하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어려서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그 어머니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그 장성함에 미쳐서는 그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다.’ 고 하였고, 또 ‘사람마다 그 어머니를 친히 하고 그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평(平)해질 것이다.’ 고도 하였다.

요순(堯舜)의 도(道)는 효제일 따름이니, 사람들 각자가 집에 들면 효도하고, 나아가서는 공경해서, 인의(仁義)의 도(道)를 극진히 다하면, 그 나머지 백 가지 행실은 모두 이를 좇아서 나오리니, 무릇 향약을 공유[同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로써 힘쓰고 힘써서 행한즉, 진실로 당우(唐虞)[요·순]의 풍속을 이루리라!”⁸¹⁾

편의상 두 단락으로 나뉘어 소개한 윗글을 통해서, 정규한은 그가 고안한 <향약절목>과 <입약범례>가 유교적 이상사회를 언표한 『맹자』의 이른바 ‘천하평(天下平)’⁸²⁾을 경유한 “당우(唐虞)의 풍속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사람의 대도(大道)는 효성[孝]·공경[悌]하는 것만 못하다.”거나, 혹은 “요순(堯舜)의 도(道)는 효제일 따름”이라는 언술은 정규한이 구축한 학문세계의 본령이 효제(孝悌) 철학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또 화산 향약이 바로 이러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제창되었음을 방증해 주기도 한다. 겹사해서 위의 인용문은 성경학(誠敬學)⁸³⁾의 기초

81) 鄭奎漢, 『華山集』卷5, 『雜著』, <立約凡例>, 407쪽, “凡我同約者, 不可不恪勤遵行, 而人之大道, 莫如孝悌, 孟子曰, 孩提之童, 無不知愛其親, 及其長也, 無不知敬其兄, 人人親其親長其長, 而天下平矣, 堯舜之道孝悌而已, 人各入則孝, 出則悌, 盡仁義之道, 則其餘百行, 皆從此出矣, 凡同約之人, 必以是勉勉行之, 則實爲唐虞之俗矣.”

82) 朱熹, 『孟子集註』, 『離婁長句(上)』의 제11장, “孟子曰, 道在爾(邇)而求諸遠 … 人人, 親其親, 長其長, 而天下平矣.”

하에 제창된 정규한의 효제 철학이 『논어(論語)』⁸⁴⁾와 『맹자』, 곧 공맹(孔孟)에 의한 원시유학이 제공한 경학적(經學的 권위에서 연원한 지적 결실임을 확인시켜 주고도 있다.

5. 맺음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정규한이 제시한 가칭 화산향약을 지탱하는 <향약절목>과 <입안범례>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그 특징적인 양상들을 아울러 살펴 보았다. 이와 동시에 화산향약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인 맹자의 ‘천하평’ 경지와 “당우(唐虞) 삼대의 풍속”과 함께, 그 철학적 근거인 정규한의 효제 철학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를 병행하기도 했다. 이하에서 전술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음미하는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다.

정규한은 기존 북송의 <여씨향약>과 <주자증손여씨향약>, 그리고 율곡의 <해주향약>과 읍·현의 선행 사례들을 두루 참조한 끝에, 강목에 해당하는 <향약절목>과 그 세칙인 <입안범례>를 순차적으로 제시하였다. 정규한이 입안한 <향약절목>과 <입안범례>는 기존 여씨·주자·율곡의 그것에 비해서 상당히 간략한 내용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궁벽진 향촌인 화산 지역의 공간적·시대적 특징을 잘 반영시킨 절목·범례집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정규한이 입안한 <향약절목>·<입안범례>는 실용성과 현장성 및 시의성을 잘 살린 향약, 곧 19세기를 전후로 한 무렵에서의 이른바 ‘조선향약의 한 전범을 개척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화산향약의 경우 효(孝)·충(忠)·우(友)·제(悌)로 대변되는 삼강·오륜의 강화에 추가해서, 시대적 변모상에 따른 이익과 재산권의 문제와 구성

83) 鄭奎漢, 『華山集·附錄』, 「行狀」, 435쪽, “其爲學也, 立心主於誠, 律己主於敬, 常以莊敬日彊, 安肆日偷之語, 自勉而詔後.”

84) 朱熹, 『論語集註』, 『學而』편의 제6장,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以學文.”

원 상호 간의 존중의 원리를 <입약범례>에 유인했을뿐더러, 하층민인 하인도 동약(同約)의 대상에 포함시켰음이 주목된다. 또한 환난상휼을 구현하기 위한 일련의 세칙들은 전래의 계 모임의 기능까지 병행되도록 명시함으로써, 화산 향약이 향민들의 삶에 긴요한 자치 규범으로 다가서게끔 조처한 점도 크게 눈길을 끌게 한다. 요컨대 정규한이 고안한 화산향약은 <향약절목>과 <입약범례>가 적절한 내용상의 균형을 유지한 가운데, 스키너(B. F Skinner)의 강화이론(reinforcement theory)에 준하는 네 부류의 벌목의 시행과 관청의 공적인 법령의 권위에 의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소기의 교화의 결실을 거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정규한이 입안한 <향약절목>과 <입약범례>란, “요순(堯舜)의 도(道)”와 “당우(唐虞)의 풍속”으로 표상되는 동양적 이상향을 구현하기 위한 전근대 시기의 전형적인 유토피아 담론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화산향약은 정규한이 주창한 학적 강령인 효제 철학의 제도적·도덕적 실천을 전시해 보였다는 점에서, 가칭 화산학(華山學)의 학문적 진정성과 사회적 울림의 정도를 동시에 가늠케도 해준다.

참고문헌

『論語集註』·『孟子集註』·『道德經』

金棧, 2006, 『儉齋集』(한국문집총간 續50), 민족문화추진위원회.

申體仁, 2010, 『晦屏集』(한국문집총간 續93), 한국고전번역원.

李珥, 1986, 『栗谷全書 I』(한국문집총간 44), 민족문화추진회.

鄭奎漢, 2010, 『華山集』(한국문집총간 續102), 한국고전번역원.

華山影堂, 『華山影堂誌(上·中·下)』, 太陽文化社, 檀紀4294년[1961].

『中宗實錄』卷35, 14년 4월 5일(戊辰).

郭齊·尹波 校点, 1996, 『朱熹集』, 成都: 四川教育出版社.

길상훈, 『공주시, 1월의 역사인물 '화산 정규한' 선정』, 『忠南日報』, 2020.12.30.

<http://www.chungnamilbo.co.kr>(2022.01.07)

김종수, 2022, 『화산 정규한의 불교 인식』, 『공존의 인간학』7,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_____, 2021, 『합인재(含忍齋) 정국채(鄭國采)의 춘추(春秋) 연찬과 우암학(尤菴學) 계승』, 『포은학연구』27, 포은학회.

朴京夏, 1992, 『朝鮮中期 鄉村支配組織에 관한 研究- 鄉規·洞契를 中心으로-』, 『국사관논총』59, 국사편찬위원회.

이근명, 2002, 『朱熹의 <增損呂氏鄉約>과 朝鮮社會-朝鮮鄉約의 特性에 대한 檢討를 중심으로』, 『중국학보』45, 한국중국학회.

李泰鎭, 1983, 『士林派의 鄉約普及運動-16세기 經濟變動과 관련하여-』, 『한국문화』4,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車勇杰, 1980, 『鄉約의 成立과 施行科程』, 『한국사론-조선전기 서원과 향약-』8, 국사편찬위원회.

Abstract

Hwasan(華山) Jeong Gyu-han(鄭奎漢)'s 'Hwasan Hyangyak(鄉約)' and Plan for Autonomy of Country Village

Kim, Jong-su
(Semyung University)

Jeong Gyu-han who was acted in Gongju(公州) area in the 19th century was a non-government Confucian scholar belonging to Horon(湖論). Jeong Gyu-han was a scholarly person who gave up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科擧) and devoted himself to studies and lectur activities all his life. Jeong Gyu-han's suggestion of 'Hwasan Hyangyak' for Hwasan, a country village has the meaning of social practice of his studies.

After referring to precedence cases without exception, Jeong Gyu-han drafted <Hyangyakjeolmok(鄉約節目)> that are the outline and details and <Ipyakbeomrye(立約凡例)> that are the detailed rules. Hwasan Hyangyak is brief more than that of Lu Shi(呂氏)·Zhu Xi(朱熹)·Yulgok(栗谷), and is characterized by strengthened practicality and timeliness. Especially, <Ipyakbeomrye> is worth notice as i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country villages and changing social aspects well.

Meanwhile, Jeong Gyu-han set realization of Mencius(孟子)' 'Cheonhapyeong(天下平)' and "Customs of Dangyu(唐虞)" as the ultimate goal. Hidden behind the foregoing is the philosophy of Hyoje(孝悌: filial piety and brotherly love)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roposition of "Duty(道) of Yao-Shun(堯舜) is to simply follow Hyoje." Hwasan Hyangyak that conforms to the autonomy norms of the community of country villages is evaluated as a typical discourse of utopia in premodern times.

Keywords Hwasan Jeong Gyu-han, Hyangjakjeolmok, Ipyakbeomrye, country village, autonomy norms

논문투고일 : 2022. 02. 03. 심사완료일 : 2022. 03. 06. 게재확정일 : 2022. 03. 07.